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제정 2020.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인은 「민법」 (이하 “법” 이라 한다.)과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통영시민의 문화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통영시 중앙로 65(도천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3. 이순신장군의 선양사업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각종 사업
4. 각종 문화공연 및 통영국제트리엔날레 등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에 명시한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재단에는 명예 이사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② 이사장 부재 시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관련국장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감사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6.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에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3장 사무기구 등

제17조(사무부서)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의 조직, 정원, 업무분장, 직원의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법령, 조례, 정관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단의 해산,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감독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대한 서면 결의사항은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련되는 사항
3. 이사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제25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재산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④ 재산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표1” 과 같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익금)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

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계속비)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3” 서식에 의하여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경과조치)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